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1호 (2020-12)
발행일 2020. 04. 08.
ISSN 2092-7117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특집호 ㉠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현황과 과제



안수란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외

- 요양병원, 요양원, 중증 장애인 시설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중요성이 커짐.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및 코로나19 대응 지침과 대응 과정에서의 쟁점을 진단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과 필수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점검해 봄.
-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과 서비스 유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배포하였으나 시설 종류별로 지침 수준이 상이하고 대응 조치의 적시성·적절성·충분성·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생활시설의 방역 강화와 인력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책 마련,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현장 사후 점검 강화, 서비스 대상과 시설 특성을 고려한 상세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시설 안전 및 인력 배치 기준 개선 등 단계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01. 들어가며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 요양병원, 요양원, 중증 장애인 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복지 생활시설 전반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
- ◆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필수 서비스 제공 유지'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두 가지 상충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생활시설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밀접 접촉이 있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 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그러나 서비스가 중단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이 주 이용자로, 특히 기저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증의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특단의 관리가 요구됨.
- ◆ 이 글은 취약계층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상황과 대응 과정에서의 쟁점을 살펴보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점검해 보고자 함.

02.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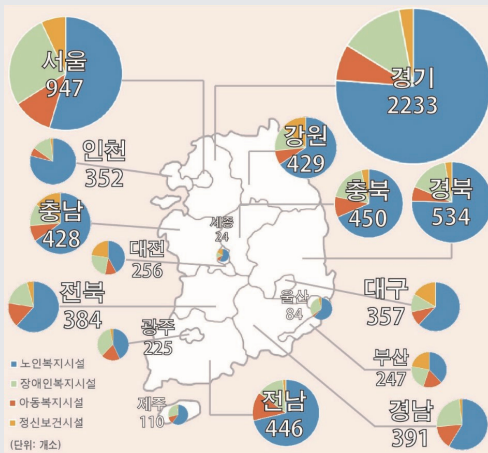
-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며, 2018년 기준 생활시설은 9290개임.¹⁾
-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보건시설이 8001개²⁾로 다수를 차지함.
 - 시설 종류별로는 노인복지시설 5445개(68.1%), 장애인복지시설 1447개(18.1%), 아동복지시설 825개(10.3%), 정신보건시설 274개(3.4%)로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이 86.2%임.
 - 경기(27.9%)와 서울(11.8%)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도 지역이 시 지역보다 시설 수가 많고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체 생활시설 중 이용자 수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시설이 2337개(29%), 이용자와 종사자 수의 합을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시설이 3684개(46%)로 대규모 집단거주시설의 비중이 높은 편임.
- ◆ 생활시설의 대상별·규모별·지역별 분포 현황과 코로나19의 높은 집단 감염률을 고려할 때, 생활시설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이 전국적으로 불가피함.

1)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2019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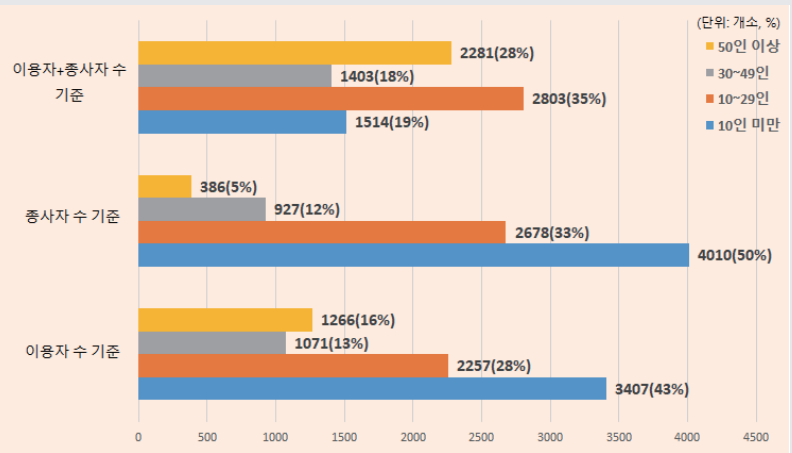
2)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포함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을 포함함(보건복지부,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이 글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현황은 2018년 6월 기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보건시설 중 이용자(입소자)와 종사자 수가 모두 입력된 시설로 한정됨. 따라서 실제 시설 현황과 일부 수치의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그림 1] 사회복지 생활시설 현황

지역별 사회복지 생활시설 분포



규모별 사회복지 생활시설 분포



주: 시스템 등록 기준 이용자(입소자) 수와 종사자 수의 값이 모두 존재하는 시설로 분석 대상을 한정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2018). 사회복지시설정보(2018. 6. 19. 기준)[데이터파일]. 재분석. 저자 작성.

03.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및 코로나19 대응 지침

◆ 생활시설의 감염병 관리는 사회복지시설 및 개별 사업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음.

- 사회복지시설의 공통 지침 성격인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는 건물, 소방·가스·전기 등 시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있으나 감염병 관리 내용은 부재함.³⁾
- 2014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하면서 감염병 발병 시 이용자 및 관리자 안전 수칙, 비상 대응 계획(시설 조치 사항)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됨.⁴⁾
 -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의 하나로 구분되어 위생안전 관리 대응 활동 수칙의 내용에 포함됨.
- 시설 종류별로 사업 안내서, 안전 관리 매뉴얼에서 감염병 관리를 다루고 있으나 지침 내용이 상이함.
 - 아동·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보건시설은 감염병 예방 교육,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제공 인력 채용 기준, 감염병 발생 시 보고 체계 등에 관한 선언적 수준의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 노인복지시설은 안전 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하여 감염병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함.
 - 특히 ‘장기요양기관 안전 관리 매뉴얼’은 [그림 2]와 같이 감염병 발생 시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과장, 간호사, 영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시설 내 인력이 확산 단계별로 해야 할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

3)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서비스지원과. (2014).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표 1〉 시설 종류별 감염병 관리 관련 지침 내용

시설 종류	관련 지침명	관련 내용
아동 복지시설	아동분야 사업안내 (2019)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
노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2017)	·시설 차원에서 평상시 대책,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내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제시 ·감염병 발생 시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명시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2019)	·감염병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관리·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명시 ·시설 내 감염, 지역 내 감염(NSC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으로 구분하여 대응 체계 구성, 각 단계별 상황 구분, 단계별 업무, 업무 분담 등 상세 명시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종류에 따른 대응 방안 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2019)	·시설이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및 만연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 ·상황 발생 시를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행정기관에의 보고 조치, 시설 내 연락 체계 마련을 명시
정신보건 시설	정신건강 사업안내(2019)	·전염병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도록 명시 ·정신요양시설은 감염성 질환 유무 확인을 위해 입소 신청자의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시설장은 매년 입소자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

자료: 1)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2) 보건복지부. (2017).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3)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 (2019).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
 4) 보건복지부. (2019). 2019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5)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

[그림 2]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 체계

단계	구분	단계별 업무	업무 분담
【1단계】 사정 확산 발생 감지	환자 발생	• 요양보호사 등: 환자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 간호사: 유증상자 확인 → 즉시 보건소 의뢰·신고	종사자 전체
	증상 사정 격리조치	• 증상 확인, 감염병 발병 가능성 조사·즉시 격리 조치 • 관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상황 보고	간호사 사무국장
	진료의뢰 및 확인 대책 마련	• 병원 진료 여부 결정하여 진료 의뢰: 보건소 협의 • 보호자 연락 → 종사자 → 시설장 보고 체계 확립 • 종사자 감염 예방 주의 안내, 감염병 정보 수시 파악 • 위원회 가동, 상황판 설치, 보건소 신고라인 가동	간호사 시설장
【2단계】 진단 확산 발생 확인	진단 확인	• 감염병 의심 환자는 확진될 때까지 지속 격리※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 협력·조치	요양보호사 간호사
	보호자 안내	• 감염병 환자 접촉 대상자 관리·작성 • 장기요양기관 내 수급자(전체) 보호자 연락, 현황 및 조치 사항 등 안내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고 및 신고 확산 방지	• 감염병 확진 시 초발 확진자 접촉 대상자 작성·보고 • 접촉 대상자 보건소 신고 및 대응 방안 협의 • 감염자 접촉 장소 소독·관리, 종사자 예방교육 철저	간호사 시설장
【3단계】 대처 확산 초기 및 유행	의심자 관리 환자 관리	• 환자: 의료기관 이송 치료(연락 체계 구축) • 감염병 추가 의심자 지속 확인: 보건소 협조	사무국장 간호사
	미감염 수급자 및 종사자 관리	•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환자 현황 지속 파악·보고 • 유사 환자 격리, 진료 의뢰 및 보건교육 • 고위험군 해당 수급자 및 종사자 특별 관리	전체 종사자 촉탁의 및 간호과장 등
	접촉자 관리	• 접촉자 조사 및 추적 관찰 • 환자가 발생한 병실 및 주변 소독 실시	간호사 요양보호사
	추가 발병자 파악 확산 방지 언론 대처	• 추가 발병자 조사 및 추적 관찰, 현황 지속 파악 보고 • 폭로 시점부터 전염기까지 접촉자 추적 파악 • 시설물 소독 및 방역, 단체활동 중지·감염 확산 방지 교육 • 보건소 연계하여 일관된 자료 제공 및 언론 대응	간호사 및 전 종사자
【4단계】 전파 차단 감염병 종식	감염병 관리·대책위원 회 운영	• 추가 의심자 및 종사자 지속 관리, 추가 환자 동태 파악 • 유행 감시: 발생 현황 통계 파악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지속 관리	• 역학조사 협조: 관련 기관 요청 시	사무국장 등
	감염병 발생종료 선언	• 최후 접촉자를 발생 질환별 최대 잠복 기간까지 추적 관찰 하여 새로운 발병자가 없으면 상황 종료	간호과장 시설장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2019).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 p. 58

- ◆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19 유행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020. 2. 3.)',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2020. 2. 4.)',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 지침(2020. 2. 21.)' 등 감염병의 시설 확산 방지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공통 지침이 수차례 배포됨.
-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에는 코로나19 관리 체계 및 유관 기관 협조 체계 구성,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접촉의 최소화, 시설 휴관(원) 시 조치, 의심 환자 발견 시 조치 사항 등이 안내됨.
 -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시설 내에 의심 환자가 대기 가능한 격리실 확보, 1인실 격리시설 사전 확보, 의심 환자와 접촉한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의 업무 배제 시 유급휴가 처리 및 대체 인력 지원 등의 세부 내용을 포함함.
 - 사회복지 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 지침은 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필수 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지자체별 사전 계획에는 서비스 제공 인력 풀(pool) 사전 확보 방안, 격리시설 확보 방안(접촉자 격리시설에 격리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방안 포함), 서비스 제공자 감염 방지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 정부가 서비스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대응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시설 종류별 상황에 맞게 수정·추가된 시설 대응 지침도 배포되었음.
-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은 세부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단계별 대응 절차 및 조치들을 안내하고 있는 반면, 정신보건시설은 공통 지침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 또한 시설 종류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됨.

〈표 2〉 시설 유형별 코로나19 대응 지침 내용

시설 종류	관련 지침명	시설 특화 주요 내용
아동 복지시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아동복지시설 대응 지침	· 시설 자체 내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지 강화 · 종사자 업무 배제 과다 발생 등으로 시설 휴원이 불가피한 경우 아동을 타 시설로 일시 전원, 관내 유희 공간이 있는 시설 현황 파악 등 아동 돌봄 유지를 위한 조치 계획 사전 마련 · 인력 지원이 어려운 경우 시설 내 종사자들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서비스 유지
노인 복지시설	「코로나19(COVID-19)」 상황별 대응 방안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입소, 재가)용	· 6가지 세부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구성 · 상황별 사례를 들어 단계별 대응 절차, 접촉 당사자 조치,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 조치, 보건소 조치 이행, 장기요양기관 조치(부분 또는 전체 폐쇄), 수급자 전원 조치, 유형별 전원 조치 등을 상세하게 안내

시설 종류	관련 지침명	시설 특화 주요 내용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안	· 각 거주실별로 배식을 하거나 층별 또는 구역별로 구분하여 급식소 이용 시간 및 동선 분리 · 코로나 발생 기간 동안 주 1회 이상 촉탁의가 시설을 방문하여 감염병 교육 및 방역 관련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각 시설 실시) · 사전 격리 공간 확보, 감염자 발생 시 밀접 접촉자와 간접 접촉자 분리 · 이용자의 이동 성향(와상, 발달장애)에 따라 감염 시 대응 방안 마련 · 장애 특성별 이송 지원(와상 장애인은 보건소 구급차 및 119, 기타 장애인은 특장차) · 자치단체는 격리시설 1:1 전담 관리 및 의식주 부족 시 지원, 시설 부족 시 청소년 수련관 등 임대 활용 · 대체 인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관별 퇴직자 또는 사회봉사자 등의 예비 인력풀을 사전에 작성하여 활용
정신보건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 대비 정신요양시설 대응 지침	·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과 동일

자료: 1) 보건복지부. (2020. 2. 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아동복지시설 대응 지침(3판).

2) 국민건강보험. (2020. 2. 20.). 「코로나19(COVID-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입소, 재가)용.

3)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020. 2. 24.).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안.

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20.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 대비 정신요양시설 대응 지침.

04.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진단

◆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코로나19 대응은 적시성·적절성·충분성·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이는 그간 생활시설의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산적해 있던 문제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남.

◆ 첫째, 생활시설의 코호트 격리 조치의 적시성 및 적절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

- 생활시설은 여러 명의 입소자가 다인실의 좁은 공간에서 공동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간 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대상 코호트 격리 조치를 단행함.⁵⁾

5) 경기매일. (2020. 3. 6.). 코로나19 ‘고령 기저질환자 위험 알아도...요양복지시설 ‘속수무책’.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35467>에서 2020. 3. 26. 인출.

- 그러나 종사자와 이용자 대상 전수 진단검사를 선행하지 않은 격리 조치는 일본 크루즈 집단 감염 사례처럼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감염 위험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보호와 안전을 이유로 한 조치가 오히려 그들을 의료권으로부터 차별·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⁶⁾

• 격리 종사자가 2주간 거주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부재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격리 조치가 내려져 종사자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제기됨.⁷⁾

- 2018년 기준 시설 요양보호사의 95%가 여성이며, 40%가 60대 이상, 50%가 50대임.⁸⁾

- 고령층의 치사율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을 감안하면 격리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했음을 의미함.

◆ 둘째, 종사자 감염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공백과 시설 내 응급 상황 발생에 유연하게 대응할 만큼 충분한 수준의 인력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음.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평상시에도 인력 부족에 따른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량이 지적되었고, 종사자 감염에 따른 서비스 공백 문제는 시설 특성과 규모에 따라 그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음.

- 가령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은 종사자가 감염되어도 전문성이 있는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어 격리된 시설에서 감염된 이용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위험 상황도 발생함.⁹⁾

-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거주시설은 1~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기 때문에 종사자가 감염될 경우 대체 인력이 긴급 투입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의 서비스 제공이 완전히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

• 시설 내에 의사 또는 간호사와 같은 보건의료 인력이 상근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긴급 의료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음.

- 생활시설의 보건의료 인력 배치 기준은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아동,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같은 소규모 생활시설에는 별도의 보건의료 인력이 배치되지 않음.

- 공공보건의료 자원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군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생활시설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셋째, 행정 관리적 측면에서 생활시설에 대한 대응 조치가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자체 행정력에 따른 대응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됨.

•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관리 주체는 시·군·구의 장으로 감염병 유행 정도와 위험 수준에 따라 지역별 대응 강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일괄적 대응 조치가 필요함.

6) 에이블뉴스. (2020. 2. 26.). 장애인거주시설 별도의 코호트 격리 방안 마련 필요.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1&NewsCode=001120200226083951965941>에서 2020. 3. 27. 인출.

7) 한국일보. (2020. 3. 17.).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코호트 격리 중단하라" 사회복지사들 '뿔났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71700739064>에서 2020. 3. 17. 인출.

8) 임정미, 이윤경, 강은나, 임지영, 김주행, 박영숙, 김혜수. (2019).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에이블뉴스. (2020. 3. 6.). 코로나19 확진 시설장애인 병원 돌봄 지원인력 모집.

<https://www.ablenews.co.kr/News/NewsSpecial/NewsSpecial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200306171538754397>에서 2020. 3. 30. 인출.

- 가령 종사자에 대한 공적 마스크 등의 방역용품 지급은 지자체와 시설장의 책임에 맡기기보다 중앙정부의 긴급 우선 지원 대책이 조기에 마련되었어야 함.

05. 나가며

- ◆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경제·사회·건강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곳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와 지역사회 파장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수준의 단계적 지원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 첫째, 긴급 지원책으로 추경 예산에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 과제가 포함·확대되어야 함.
 - 마스크, 손소독제, 보호복 등의 방역물품은 생활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우선적인 공적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생활시설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 장애인 거주시설은 의료적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공의료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방역물품 지원이 필요함.
 - 코호트 격리 시설, 종사자 부족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되어야 함.
 -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대체 인력 지원비 및 추가 근무 수당을 확진 발생 시설당 최대 500만 원까지 긴급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이러한 시설 종류별 개별 대응보다는 전체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일관성 있는 인건비 지원 대책이 필요함.
- ◆ 둘째,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대응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해당 지침의 실효성은 있는지 지자체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관 기관 협조 체계 구성, 위생 관리, 의심 환자 모니터링, 1인 격리실 사전 확보, 대체 인력 풀 구성, 서비스 연계 등의 지침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 ◆ 셋째, 시설 종류 및 서비스 특성에 따른 감염병 관리 및 대응 매뉴얼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함.
 - 현재 안전관리 매뉴얼은 시설 종류와 사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바, 최소한 장기요양기관 안전 관리 매뉴얼 수준으로 시설 종류별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적기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함.
 - 감염 발생에서 종식까지의 단계별 상황, 상황별 수행 업무, 업무별 역할 분담에 대한 상세한 안내 지침이 주요 서비스 대상, 서비스 특성,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설 종류별로 별도로 배포되어야 함.
 - 이때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서비스 기능 유지를 위한 세부 지침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시설의 격리, 폐쇄, 종사자의 업무 배제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의 자원(시설 공간, 인력, 물품 등)이 어떻게 연계·공유되어 이용자에게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 ◆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종식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감염병 교육 실시 이상으로 시설의 안전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배치 기준 및 대체 인력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추가적 조치가 논의되어야 할 것임.

코로나19로 인한 개학·개원 연기, 돌봄 부담을 분담으로

돌봄을 함께하면 부담은 반으로! 행복은 배로!

- ✓ 돌봄 및 가사 노동은 가족이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 공유
- ✓ 모두의 상황을 배려한 역할 분담 계획 결정
- ✓ 계획을 잘 실천한 가족구성원에게 미리 정한 보상하기
- ✓ 부득이하게 특정 가족이 담당할 경우 감사함을 표현하기
- ✓ 자녀와 함께 하루 일과를 작성하고, 서로 친밀감을 높일 수 기회로 활용하기

아이돌봄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청 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용료 부담 완화(평균 37.6%)	 유아·초등학생 대상	 초4-중3 대상
 온라인 신청 가능 www.idolbom.go.kr	 08시-19시 운영 및 급식 제공	 09시-21시 운영 및 급식 제공
 1577-251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02-330-2831